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034
------------	------

2022년 2월 14일
교 육 위 원 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년 1월 19일, 송명화 의원외 19명
 2. 회부일자 : 2022년 1월 25일
 3. 상정일자 : 제30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 제4차 교육위원회(2022. 2. 14.) 상정·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송명화 의원)

1. 제안이유

- 도시숲 등의 체계적인 조성·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내 학교숲 조성 및 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학교숲” 의 정의를 명시함(안 제2조)

다. 학교숲 조성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학교숲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자연성 확보, 접근성 확대 등의 학교숲 조성 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마. 학교숲 활성화를 위해 학교숲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학교숲 교육 교수학습방법 연구 및 보급 등의 시책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함(안 제7조)

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사.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아. 학교숲의 조성, 관리 및 활성화 등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자. 학교숲의 조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자치구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2년 1월 19일 송명화 의원 등 20명의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3034호로 발의되어 2022년 1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내 학교숲 조성 및 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내 자연 친화적 생태 공간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 및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제정 취지에 대한 의견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에 따르면, ‘학교숲’은 ‘생활숲¹⁾’의 한 종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²⁾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의미합니다.
- 생활숲은 코로나19 이후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바,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 주민복지시설 등이 폐쇄되면서 거주지 인근 생활권 숲의 이용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등³⁾ 도시민들이 거주지 기반의 근거리 지역에서 숲 등의 자연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입니다.
- 이에 국회에서는 지난 2020년 6월 9일, 도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생활숲”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가. 마을숲: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나. 경관숲: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다. 학교숲: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2)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3) 국립산림과학원(2021.4..1). 코로나 시대, 숲 이용 트렌드의 변화 및 시사점.

환경 및 휴양·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시숲·생활숲·가로수 등(이하 ‘도시숲등’)의 체계적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도시숲법」을 제정한바 있습니다.

- 또한 서울시도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도시숲 조례’)」를 제정하여 서울시 여건에 맞게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바 있습니다.
- 그러나 서울시 도시숲 조례에는 도시숲등의 하나인 ‘학교숲’이 서울시교육감의 관리 대상이라는 이유로⁴⁾ 서울시장의 도시숲 조성·관리 범위에서 제외되었는바 별도의 ‘학교숲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와 같이 동 조례안은 「도시숲법」 및 같은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에 따라 서울시내 학교숲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코로나19 등 다양한 환경문제에 따른 학교 구성원 및 도시민의 건강 및 생활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입법조치라 사료됩니다.

나. 조례안의 체계와 주요 조문별 검토

1) 조례안의 체계

- 동 조례안은 총칙 규정으로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을 규정하였고, 본칙 규정으로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학교숲의 기본계획 수립, 조성 기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행·재정적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총 16개의 조문으로

4)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2021.12.17.).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조문 간 구성과 체계, 내용 등에 있어서 「자치법규 입법실무」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 학교숲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검토(안 제4조)

- 안 제4조는 교육감이 학교숲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숲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기본계획에는 학교숲 조성의 기본 방향 및 목표, 학교숲의 전문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2013년부터 ‘에코스쿨⁵⁾ 조성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서울 시내 총 403개교에 학교숲 등을 조성하여 왔습니다.

[표-1] 서울시 에코스쿨 조성 현황

구 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개 교 수	403	23	19	39	68	56	67	56	46	29
조성면적(m ²)	282,659	19,355	13,900	26,940	50,365	37,213	46,683	38,427	27,260	22,516
사업비(백만원)	53,359	2,757	2,086	4,210	8,692	7,699	9,245	7,700	6,050	4,920

- 그러나 동 계획은 학교숲 조성을 목적으로 학교숲 조성 대상, 규모, 사업비 등에 대한 계획만 포함되어 있을 뿐, 학교숲 조성 이후 학생들이 교육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 개발,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의 학교숲에 대한 전문적인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동 조례안 제4조는 현재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5) 서울시내 초·중고교에 학교숲 및 자연학습장을 조성하는 사업

도시숲 정책을 반영하고 서울시에서 이미 조성한 학교숲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향후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숲 조성 및 활용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입법조치라 사료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힌바 있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502, 2022.1.28.).

다. 입법예고에 대한 검토

- 한편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8일까지 실시된 입법예고 기간 중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는바,

의견의 주요 내용은 ① 학교숲 조성 기준 중 안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동 기준에 학교구성원 및 지역사회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안 제5조),

② 교육감은 학교숲 수목배치도면과 현황을 작성 · 관리하고, 학교장은 서울시 등으로부터 이관받아 관리하는 수목을 처분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할 것(안 제6조),

③ 교육감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관계 기관 이외 단체도 참여하게 할 것 등입니다(안 제14조).

- 이와 같은 의견들은 동 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이나 잘못된 조문에 대한 수정의견이라기 보다 추가적으로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에 따라서는 굳이 조례에 반영하지 않고 기본계획에 포함하거나 교육규칙을 통해 의견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부분도 엿보이는바,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제정 이후 입법예고를 통해 제시된 의견 중 기본계획이나 시행규칙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동 조례의 집행과정에서 반드시 조례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판

단되는 내용이 있다면 차후 조례 개정을 통해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내 학교숲 조성 및 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 친화적 생태 공간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숲”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 등에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식물과 시설로 만들어진 공간을 말한다.

1. 자연적 조건과 기존 식생 등을 고려한 수종 및 교과서에 수록된 수종을 중심으로 한 나무, 꽃, 잔디, 지피식물류 등의 수목과 식물
2. 의자, 쉼터, 숲 해설관
3. 그 밖에 학교숲 조성을 위한 시설물 등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에 적용한다.

제4조(학교숲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숲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숲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숲 조성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학교숲의 적합한 수종과 시설물의 선정 및 조성에 관한 사항
3. 학교숲의 전문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학교숲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5.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숲 개방
6. 신설학교 및 그린스마트미래학교의 학교숲 조성
7. 학교숲 연계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8. 그 밖에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학교숲 조성 기준)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연성 확보: 자연 생태적 특성에 부합하도록 조성
2. 기능성 실현: 조성 목적, 학교 환경, 교육적 활용 여건에 적합하도록 조성
3. 접근성 확대: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의 활용이 쉽도록 조성
4. 교육적 활용: 향토 수종, 교목, 교육과정에 제시된 수종을 선정하여 조성하고 교육적 활용이 연계될 수 있도록 조성
5. 다목적 공간 구성: 체육 공간, 쉼터, 산책로 등 다양한 기능의 복합적 환경 고려 조성
6. 녹지면적 확대: 실내조경, 벽면 녹화, 옥상정원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녹지면적 확대
7. 안전성 확보: 조성 및 관리, 교육 활동 시 안전을 위한 대책 및 시설 확보

제6조(학교숲 관리) 학교의 장은 조성된 학교숲의 관리를 통하여 지속적인 보전과 활용 및 체계적인 유지보수 및 보강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7조(학교숲 활성화) ① 교육감은 학교숲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숲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2. 학교숲 교육 교수학습방법 연구 및 보급
3. 학교숲 관련 학생 교육 및 교직원 직무연수
4. 학교숲 활성화를 위한 홍보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학교숲 조성 및 관리 위원회) 교육감은 학교숲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7조의 학교숲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련업무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학교숲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교육감이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재해 등 긴급한 사유로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 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교육감은 학교숲의 조성, 관리 및 활성화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자치구 및 관계 기관과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우수사례 발굴 등)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및 관리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표창 등을 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